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br>번호 | 14615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회

## 1. 대안의 제안경위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심사경과  |
|---------|-------|--------------|---|
| 2201013 | 김선민의원 | 2024. 6.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li></ul> |
| 2201942 | 박희승의원 | 2024. 7.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 상정</li></ul>                                 |
| 2211802 | 김미애의원 | 2025. 7. 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li></ul> |

가.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1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11. 20.)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은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급여 이외에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

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은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안 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미지급 급

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2 조제3항제4호 신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4. 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과소득월액이”를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한다.

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족연금, 미지급금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를 “유족연금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 한다. |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   |
| 1. ~ 3. (생 략)  | -----.   |
| <u>&lt;신 설&gt;</u>   | 1. ~ 3. (현행과 같음)   |
| 4. (생 략)   | <u>4. 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u> |
| ② 공단은 <u>제1항제1호 및 제2호</u>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   | 5. (현행 제4호와 같음)<br>② ----- <u>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u> -----   |



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 4. · 5. (생 략)

제82조(급여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 3. (생 략)

<신 설>

3.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  
-----

#### 4. · 5. (현행과 같음)

제82조(급여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유족연금등-----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